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 Q&A

검역

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

- (배경) 유럽 · 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세계에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
- (대상)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민 및 외국인
- (관리) 증상별(유증상·무증상), 국적별(내국인·외국인), 외국인(장·단기), 격리면제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, 해외입국자(승무원 제외) **전수** 진단검사 실시

검역소

-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 받고, 격리통지서 발급 및 진단검사 등 수행

보건소

- (자가격리 대상자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 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
- (시설격리 대상자) 시설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지정 격리시설에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 및 능동감시
- ※ 입국자 관할 보건소 또는 시·도에 관리대상 명단 통보방법
 -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(법무부), 자가격리자안전보호앱(행정안전부),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질병관리본부)을 이용하여 확인

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

구 분	입국장소	대상자	진단검사	격리시설	앱설치	
유증상자	공·항만	입국자 전수	검역소	음성일 경우, 무증상자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	-	
무증상자	공항	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	보건소	자가	(행안부)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	
		단기체류 외국인	인천공항	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	중수본 운영 임시생활시설	(복지부) 모바일 자가진단앱
			그 외 공항	지자체 지정 격리시설	지자체 지정 격리시설	
		격리면제자	중수본 운영 임시검사시설	-		
	항만	내국인, 장기체류외국인	검역소	자가	(행안부)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	
		단기체류외국인	검역소	해수부 운영 격리시설	(복지부) 모바일 자가진단앱	
		격리면제자	검역소	-		

격리 해제

- (보건소)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(12:00)에 격리해제됨을 안내하고 모니터링 종료
- * (예시) 입국일(4.1.)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.25. 정오(12:00) 격리해제
- ** 단, 시설격리일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
- (모니터링 해제) 모니터링 해제 통보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종료 조치

격리 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

【격리해제 전 추가검사 대상】

-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입국일로부터 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만 14일이 경과한 날 정오(12:00)에 격리 해제
 - ① 의료기관 종사자(간병인 포함)
 - ② 사회복지시설* 중 생활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
 - *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“사회복지사업”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
 - ③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 및 교직원
 - ④ 확진환자의 동거가족(동거인포함)
 - ⑤ 만 65세 이상 접촉자
 - ⑥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및 기타 지정국가* 등
 - * 코로나19 국내외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별도 통보 예정

외국인인 경우, 자가격리 중이지만 증상 없고,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

- 집이나 숙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익적·인도주의적 사유(임종·장례식) 등 해당 지자체장이 승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진단검사(입국 후 3일 이내 검사)에서 음성이면 출국 가능함
-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,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출국이 가능함

개인정보 및
자가격리
주소(위치) 등록

격리장소
이탈 시 알림



자가진단
✓
전담공무원에게
자동 통보

자가격리 생활수칙
및 전담공무원
연락처 제공



마지막 자가진단
없음

자가진단
목록



정보 등록/수정 >



생활수칙안내 >



전담공무원 연락처 >



1339 >

Ver 1.1.6

오늘 발생한 증상을 선택하세요.

열(37.5°C 이상) 또는 발열감

예

아니오

기침(Cough)

예

아니오

인후통(목아픔)(Sore Throat)

예

아니오

호흡곤란(숨가쁨)(Dyspnea)

예

아니오

마침

출처

질병관리본부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

**대응 지침서 9-2판 Q&A 게시판
(2020.8.20.)**